

| | | | | | | |
|------|--------------|---|-----|-----|-----|-----|
| 문서번호 | 기획예산실-4813 | 담당자 | 팀 장 | 실 장 | 부시장 | 시 장 |
| 보존기간 | 3년 | 오훈 | 김영리 | 김준두 | 전 결 | 김영호 |
| 결재일자 | 2022. 5. 20. | 협 조 | | | | |
| 공개여부 | 공개 | 감사1팀장 김기 청렴감사실장 이서진 감사2팀장 이재영 인사팀장 김서민 총무새마을과장 김호원. | | | | |

시민체감 행복김천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김 천 시
[기획예산실]

|| 목 차 ||

| | |
|--------------------------------------|-----------|
| I. 적극행정 추진현황 | 1 |
| II.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 3 |
| III. 적극행정 문화 조성 | 5 |
|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5 |
|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6 |
|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8 |
|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8 |
|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9 |
|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10 |
|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10 |
|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11 |
| 3.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지원 강화 | 12 |
| VI.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13 |
|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14 |
| 1.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14 |
| 2. 적극행정 홍보·확산 | 14 |
|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15 |
| VIII.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16 |

2022년 김천시 적극행정 추진계획

- ❖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직자의 적극행정 실천을 강화하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인센티브 및 보호·지원으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행정환경 급변으로 인하여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불합리한 규제혁신 및 고충민원 등 행정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됨

◆ 적극행정 : 현장 일선 공무원들이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 변화와 시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익을 증진하는 행위

2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3

2021년 주요 추진성과

- 시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김천 호두 브랜드 인지도 구축
 - * 관광기념품 개발과 호두 자동 탈각장치 발명으로 김천 호두 이미지 브랜딩화
 - 드론 활용을 통한 업무 능력 제고
 - * 각종 산림조사, 산불예방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업무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선발인원 : 6명(상·하반기 각 3명 선발)
 - 인센티브 :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가점부여 및 포상금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및 홍보 : 신청 3건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전파
-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 실시)
- 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21.2.4.)
 - 하급자가 정책결정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책임지지 않도록 기관장 또는 간부공무원 등에 책임배분을 통해 적극행정 선도

4

반성 및 평가

-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기존제도 활성화 및 참여동기 방안 확대
 - 면책제도 활성화, 보호지침 제정 등 부담완화 지원과,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특전 확대 등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 필요
- 시민체감 부족
 - 경진대회 심사, 우수공무원 추천 등 다양한 시민참여방식 확대와 대내·외 홍보 콘텐츠 개발 필요

II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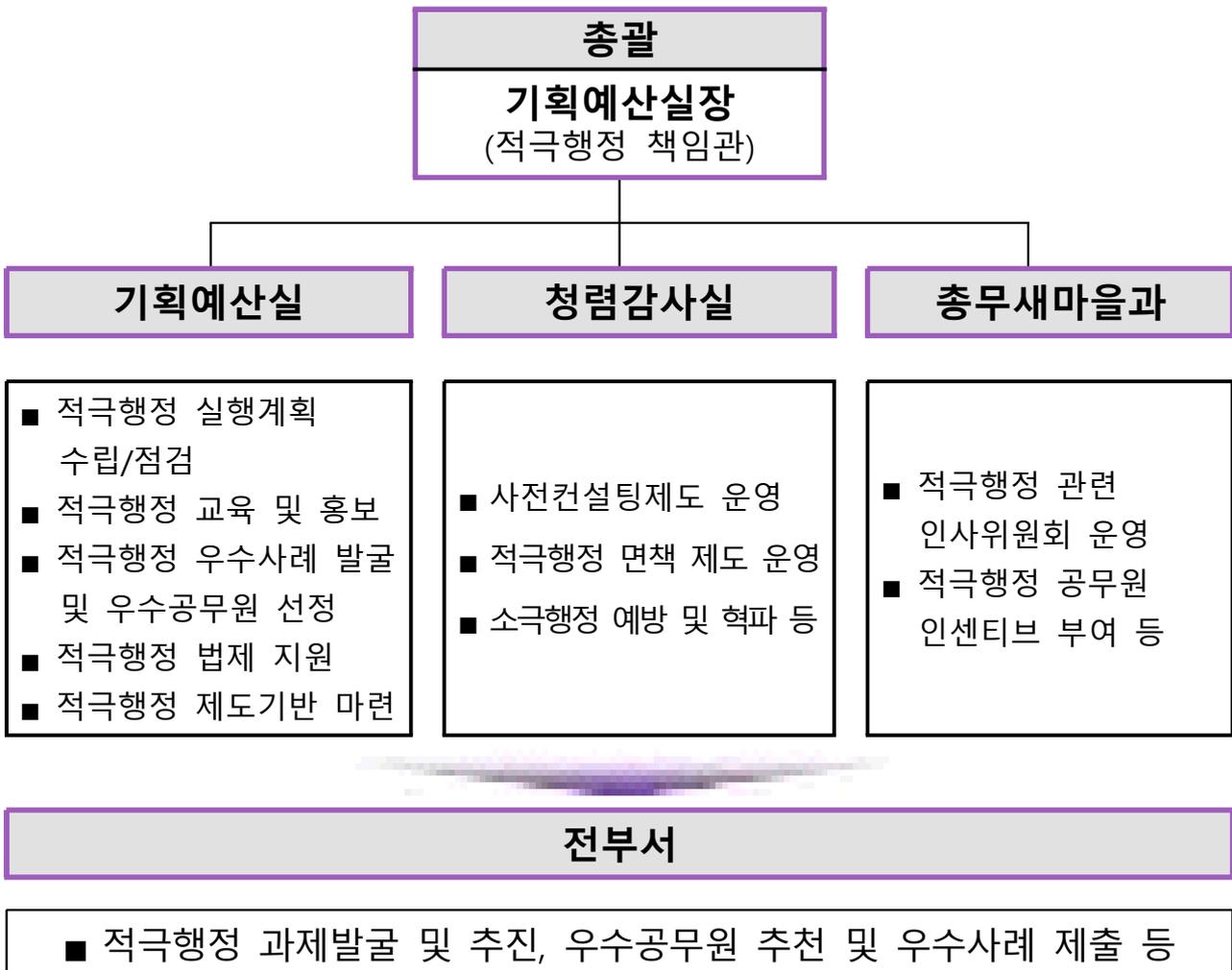
'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 비전-전략 체계도

| | | |
|---------------------------------|-----------------------------|---------------------------|
| 목표 |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확실한 체감 | |
| 추진분야 | 3대 분야 11개 핵심과제 | 소관부서 |
| 적극행정 운영체계 확립 |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운영 | 기획예산실(기획팀) |
| |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 기획예산실(기획팀) |
| | ③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기획예산실(기획팀) |
| | ④ 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 기획예산실(기획팀) 총무새마을과(인사팀) |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⑤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청렴감사실(감사2팀) |
| | ⑥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 | 청렴감사실(감사2팀) |
| | ⑦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지원 강화 | 기획예산실(의회법무팀) |
|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소극행정 혁파 | ⑧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기획예산실(기획팀) 총무새마을과(인사팀) |
| | ⑨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 기획예산실(기획팀) |
| | ⑩ 적극행정 주민 참여·소통 강화 | 기획예산실(기획팀) |
| | ⑪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엄정 조치 | 청렴감사실(감사1팀) |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운영

- (추진방향) 인사, 교육, 감사, 혁신,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적극행정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총괄부서 및 책임관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 적극행정 추진과제별 협업부서 : 청렴감사실, 총무새마을과
 - 적극행정 과제발굴 및 추진, 우수사례 제출 : 전부서
- (부서별 역할)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추진방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경과 및 성과 관리
- (선정기준)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 ▶ 기존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혁신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선정과제)

| 사업명 | 관련부서 |
|--|--------------|
| <p><지좌 황산공원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김천 혁신도시와 비교하여 공원이 부족한 구도심 주민들이 휴식공간 필요성 민원 제기 → 산책로, 광장, 물놀이시설, 휴놀이터,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 추진일정 ·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2019년 9월) ·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2020년~2021년) · 토목, 전기, 통신공사 착공(2022년) · 조경, 부대시설 설치 및 준공(2023년) ▶ 기대효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힐링공원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 <p>건설도시과</p> |
| <p><장애인 회관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각 장애인 단체 사무공간이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장애인 시설 이용 불편 호소 → 장애인 회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 단체 간 소통 및 정보 교류의 장 제공 ▶ 추진일정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2년 6월) · 공사 착공(2022년 9월) · 공사 준공(2024년 4월) ▶ 기대효과 장애인 단체 간 공동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장애인 권익 향상과 편익 도모 | <p>사회복지과</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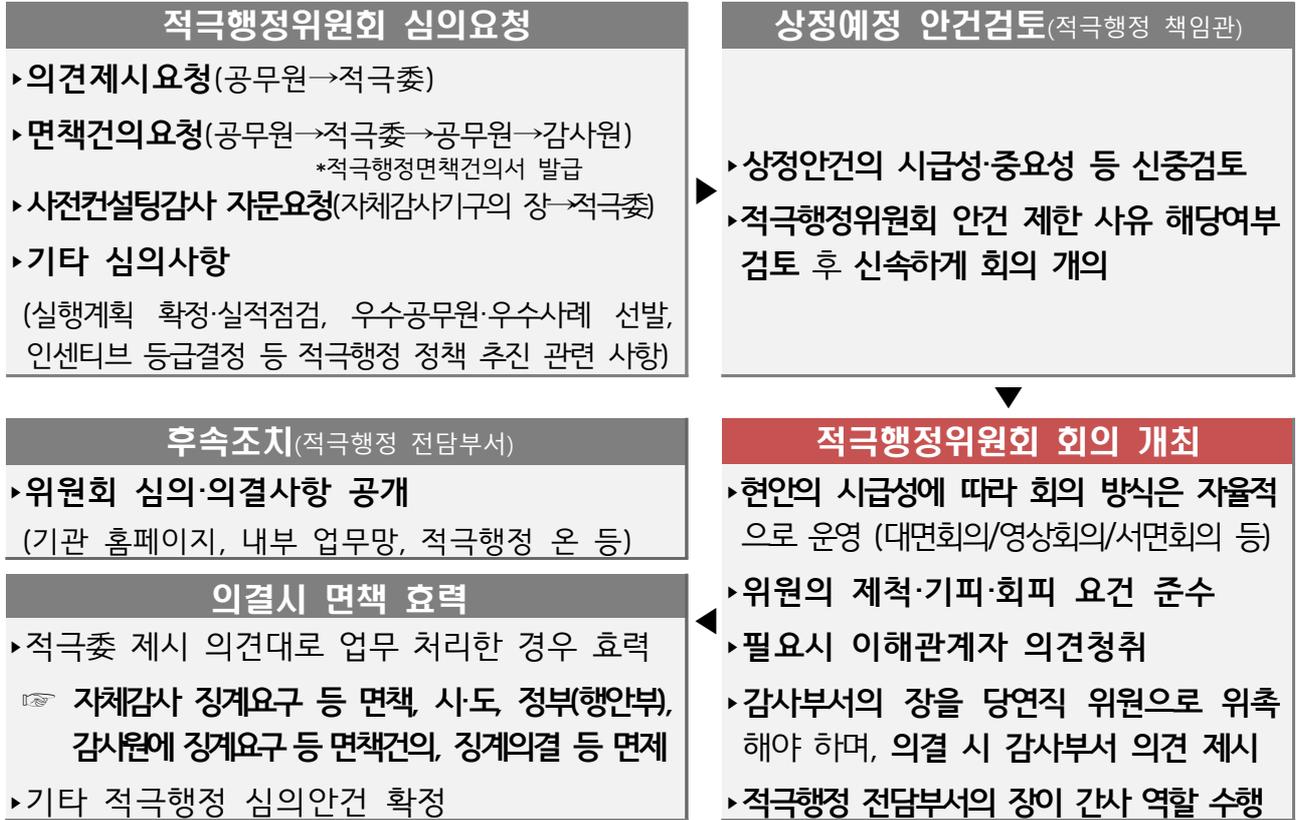
□ 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 (추진방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의 추진사항 심의 및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합리성 도모
- (구 성) 적극행정위원회는 김천시 인사위원회가 대행
 -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 시 기획예산실장, 청렴감사실장이 참여하여 회의 지원

| 김천시 인사위원회 | 위원장 | 총원(명) | 민간참여 | | 성별 | |
|--------------|-----|-------|------|----|----|----|
| | | | 내부 | 외부 | 남자 | 여자 |
| | 부시장 | 17 | 5 | 12 | 11 | 6 |

- (기 능) 적극행정 관련사항 심의·의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
- (개최시기) 실행계획 수립 및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정기 개최하되 안전 심의 및 의견제시 요청 심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개최방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결과공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안전명, 주요내용 등) 시 홈페이지 및 '적극행정 온'(행안부 통합 플랫폼) 등 공개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흐름도 >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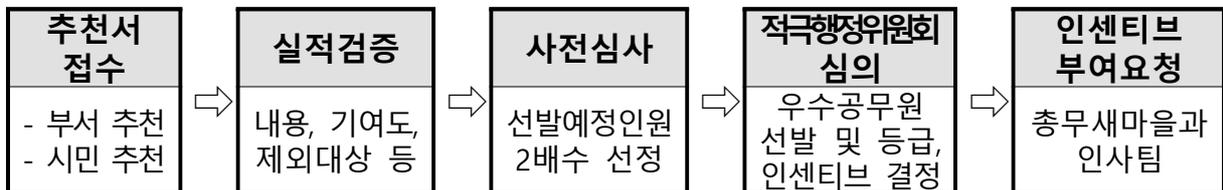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확산

* (확대) 공무원 → 공무원, 계약직 직원 등 모든 구성원 포함

□ 추진내용

- (선발시기) '22년 6월, 12월
- (선발규모) 6명(반기별 우수공무원 3명 내외)
 - * 적극행정 우수 부서 및 팀 별도 선정
- (선발요건) ①적극적·도전적·창의적 업무추진으로 성과창출자
②장기미해결과제, 갈등·현안사항 혁신적으로 해결한 자 ③행정
수요·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 자
- (선발기준) 시민체감도, 담당자 적극성·창의성, 과제중요도, 파급효과 등
- (선발방법)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개인별 평가
- (추진절차)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장려 및 공무원 사기 진작

□ 추진내용

- (시 기) '22년 6월, 12월
- (대 상) '22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 * (기준) 최우수/우수/장려
- (부여원칙)
 - 인사운영 여건 및 개인희망 고려, 인사상 우대조치 하나 이상 부여
 - 우수공무원 선발인원 중 50% 이상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 최우수 : 특별승급, 포상금 100만원
 - * 우 수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금 70만원
 - * 장 려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금 50만원
- (결정방법)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대조치 부여 심의·의결

| 구 분 | | 주요내용 |
|------------|------|--|
| 특별승급 | 6급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봉제 적용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 6급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
| 포상금 지급 | 전 직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지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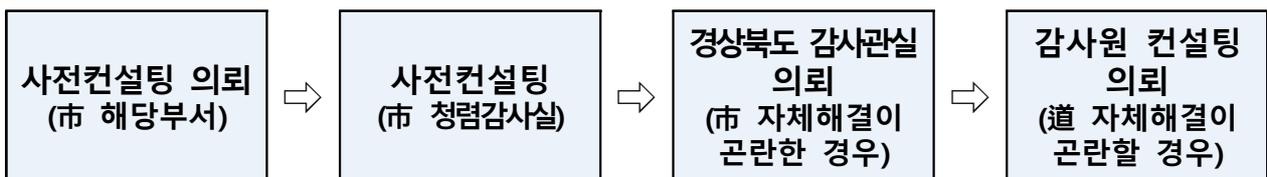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개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대상)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 제외대상>

-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회피의 수단으로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절차)



- 우리시 자체적 의견통보 기능(자체감사기구 기능) 강화
 - * 인·허가 규제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적극행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 사안에 대해 제한 없이 운영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처리의 신속성 확보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 처리에서 가급적 15일로 단축처리
-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기준 충족
- (활성화)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직원 대상 홍보 및 안내
 - 부서 자체 종합평가 항목에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 반영 및 가산점 부여

- (개념) 공무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 (면책대상)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 경우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 (활성화)
 - 자체감사 시 현장면책 창구 운영
 - * 적극행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면책을 결정하여 신속히 해결
 - 직원 대상 각종 회의,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홍보

□ 추진방향

- 적법하고 적극적인 공무수행 과정상 발생한 징계·소송 등에 대하여 법제 지원 및 관련 공무원 보호를 통해 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및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추진내용

- (대상)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뢰, 형사피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김천시 소속 공무원
- (지원내용)
 - (법률자문가 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변호사(고문변호사, 임기제 공무원 등) 지원
 - * 기소이전 수사단계,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 지원
 - (소송비용 지원)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2조(지원대상)①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책임보험 운영) 2022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통합계약

| 보장하는 사고(공무원 수행 공무 관련) | 보장 금액 : 1인당 연간 3건(총 9천만원)까지 보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하나의 사건 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보장 ○ (형사) 하나의 사건 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단계 및 1심 각 1,000만원 / 2·3심 각 500만원 한도 |

□ 추진방향

-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하여 소극행정 차단

□ 추진내용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 행태 수시 점검 실시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가로막는 적당편의, 복지부동, 관중심행정 등 소극적 업무행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적발 시 엄중문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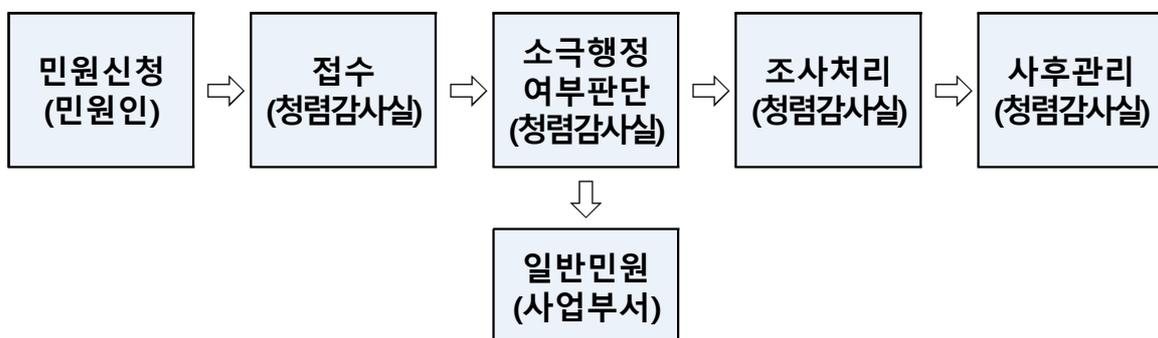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다양한 소극행정 사례 홍보를 통해 소극행정 근절 분위기 조성

○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운영)

- 감사부서 자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시청 홈페이지 '소극행정 상시신고센터' 및 '시장에게 바란다', 방문, 전화 등을 통한 신고·접수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판단 후 자체조사 처리 또는 해당 부서 이첩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연계 운영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추진방향

-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 및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내용

- 직장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시, 상시교육체계 운영
 - 적극행정의 이해와 사례 전파를 위한 직장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인사처), 찾아가는 법제가이드라인 교육(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주요 사례 교육(감사원) 등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 및 경상북도 적극행정 강사와 연계하여 추진
 - 나라배움터 ‘적극행정의 이해’ 등 사이버과정 이수 독려

적극행정 홍보·확산

□ 추진방향

- 적극행정 제도, 우수공무원 및 사례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전파

□ 추진내용

【홍보채널 다양화】

- (홍보 콘텐츠 제작)
 - 우수사례 관련 카드뉴스, 리플릿, 포스터, 사례집, 동영상 등 제작
 - 청사내 비치, 온라인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사례 전파 및 적극행정 독려
- (시 홈페이지 활용)
 - 지원제도 및 우수사례 소개, 시민참여 등 홍보콘텐츠 게시
- (행안부 적극행정 플랫폼 ‘적극행정 온(on)’ 활용)
 - 시 주요시책, 우수사례 소개 및 카드뉴스·동영상 등 게시

- (월간 「김천 사랑방」 연재)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연재
- (언론매체 활용) 언론보도를 통한 우수사례, 면책사례 등 홍보
- (시 공식 SNS·유튜브 채널 활용)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 추진내용

- (주민 참여·소통)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인식제고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소통창구 운영
 - 적극행정 제도, 우수사례 등 적극행정 홍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주민 추천 코너 운영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DB) 신설 / 행안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연동
- (국민신청제 운영)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운영절차)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에서 접수검토 후, 소관기관 배정
 - * 소관기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절차를 거쳐 신청 처리
 - (신청요건)

| 신청 대상 | 제외 대상 |
|--|---|
| > 신청 대상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 >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결 처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순 질의·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

| 주요 내용 | 소관부서 | 일정 | 비고 |
|-------------------------------|-----------------|--------------|----|
| 1. 적극행정 운영 체계 확립 | | | |
|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운영 | 기획예산실 | '22. 5월 | |
|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 기획예산실 | '22. 5월~ | |
| ■ 적극행정 중점 과제 선정 | 기획예산실 | '22. 5월 | |
| ■ 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 기획예산실 총무새마을과 | 계속 | |
|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 | |
|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청렴감사실 | 계속 | |
|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 | 청렴감사실 | 계속 | |
| ■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지원 강화 | 기획예산실 | 계속 | |
| 3.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소극행정 혁파 | | | |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기획예산실 총무새마을과 | '22. 6월, 12월 | |
| ■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 기획예산실 | 계속 | |
| ■ 적극행정 주민 참여·소통 강화 | 기획예산실 | 계속 | |
| ■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엄정 조치 | 청렴감사실 | 계속 | |